

#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22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1월 일

발 의 자 : 오 승 철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교 등·하교 시 어린이의 안전보행을 돕고,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지도 등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. 그러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·관리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, 행사 참여, 안전 관련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한계가 있음.
- 나. 따라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주요활동 범위를 정하고, 예산 지원과 지도·감독,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본 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고, 하남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주요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원금(예산) 사용에 대한 지도·감독을 규정(안 제5조)
- 라. 회원 교육 및 공로가 우수한 단체·회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(안 제6조~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라. 기타사항 : 덧붙임

##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등·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녹색어머니회”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·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.
2. “녹색어머니연합회”란 하남시 관내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등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어린이 등·하굣길 교통안전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주요활동)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
2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도 활동
3.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

4.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
5. 그 밖에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지원)**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
2.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
3.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
4.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
4. 그 밖에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**제5조(지도 및 감독)**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교육)**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연합회 구성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하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「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### □ 「교통안전법」

제23조(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)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□ 「도로교통법」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28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7. 7. 26., 2018. 3. 27., 2021. 10. 19., 2023. 4. 18.>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5.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
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7.>

##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(2026. 1. . 현재)

연 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 · 개정 일	소관부서	비고
1	경기도 화성시	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5-07-11	교통국 교통정책과	
2	경기도 광명시	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06-21	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	
3	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	2023-02-24	교통국 교통정책과	
4	인천광역시 강화군	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2-31	안전건설국 도로교통과	
5	충청남도 공주시	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19-11-28	건설도시국 교통과	
6	충청남도	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17-09-20	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	
7	충청남도 계룡시	계룡시 녹색 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17-04-10	건설교통실	
8	경상북도 상주시	상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15-11-20	건설도시국 교통에너지과	